

평창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 가. 제출일자및제출자 : 1999. 12 . 17 평창군수(건설과장)
- 나. 회부일자 : 1999. 12. 20
- 다. 상정일자 : 제73회 평창군의회(정기회) 제1차조례특위('99.12.21)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건설과장 박현창)

가. 제 안 이 유

- 도로법 개정, 동법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감면대상을 구체화하기 위함.

나. 주 요 내 용

- 점용료 감면대상을 구체화(안제5조)
- 점용료 미부과를 500원에서 5,000원으로 상향조정
- 점용료 산정기준을 시행령에 따라 세분화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허해성)

- 본 조례는 '99. 2. 8 도로법 개정(법률 제5914호), 99.8.6일

동법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16,510호), '99.9.2 도로법시행
규칙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으로서

- 개정주요 내용은 사회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여 도로의
점용제도를 개선하는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도로법 제44조(점용료 징수)

의 공익등에 대한 점용료 감면대상이 세부적으로 명시됨에
따라 조례상 이를 반영하고 부과미징수 상한이 5천원미만으로
하는 동법시행령 제26조의3 제3항이 '96.7.1일 개정됨에 따라

조례상 500원 미만을 이에 부합되게 조정하며, 점용료의
점용물의 종류를 동법시행령에 따라 세부적으로 명시코자 하는
것으로서 별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붙 임 : 평창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증개정조례안 1부 . 끝 .